

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, 운영 실천사항 운영 지침

1. 목적

본 운영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『하도급 거래 내부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』을 준용하여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구성,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목적이 있다.

2. 심의 대상

(1) 주요 심의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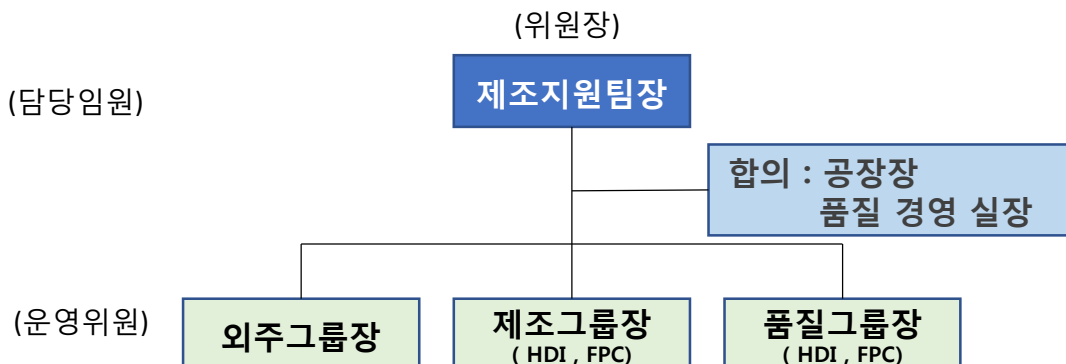
- 1) 가격 결정 심의 : 96억/年 이상 거래 협력사의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등을 사전 심의
- 2) 협력회사 선정, 등록,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
- 3) 협력회사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심의
- 4)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사항 발생시 분쟁 조정
- 5) 하도급법 준수 사항 점검 (의무사항 및 금지 사항 준수 여부)
- 6) 불공정 거래 관리 감독

(2) 기타 심의 사항

- 1) 하도급 업무 진행 관련 issue 사항 협의
- 2) 공정 거래 및 동반성장 지원 사항 협의

3.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(1) 제조지원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주그룹장, 제조그룹장, 품질그룹장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공장장 및 품질 경영 실장 합의하여 진행 한다.



- (2) 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심의안건이 발생되면 수시로 진행할수 있다
- (3) 위원회는 필요시 수급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 한다
- (4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여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인사팀에 건의 한다.
- (5) 협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‘ 안건 없음 ’ 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할수 있다 .

4. 심의 내용

(1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 한다

1) 가격 결정등 하도급 거래에 관한 사항

2, (1), 1)항의 하도급 협력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기본 약정서 체결,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

-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 여부
-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
- 원재료의 사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여부 등
- 물품 등의 구매 강제금지 위반여부
-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

2) 업체 등록 심의 및 거래 중단에 관한 사항

하도급 거래 협력사 (신규등록 협력업체 포함)에 대한 등록심의, 거래 중단에 대한 절차의 적절성 여부 및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심의

3)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및 협력사 불만 접수시 이행 조치 심의

4) 기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심의

5) 하도급 업무 진행 관련 issue 사항 심의

구분	내용	참석
정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도급관련 중요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협의체 로 운영 - 96억/年 이상 거래 협력사의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등 적절성 여부 심의 - 협력업체 선정, 등록,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-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심의 -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사항 발생시 분쟁 조정 - 하도급 관련 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법규 준수사항 점검 -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시 심의 - 협력사 불만 접수시 심의 및 대응 -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정책 	<p>위원장 담당임원 운영위원</p>
수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력사 capa 현황 및 외주비용 감축 협의 	<p>제조그룹장 외주그룹장</p>

5. 사후 관리

- (1) 위원회는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 회의록은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위원장 결재를 득하고 각 위원의 합의를 득한다
- (2) 위원회 관련 증빙문서는 심의 종료일로 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